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. 9. 11 선고 2019가단72875 판결 [임차보증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19. 8. 14

판 결선고 2019. 9. 11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3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8. 5. 1.부터 2019. 4. 23.까지는 연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김준영

별지